

제172회 영등포구의회
2012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
전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2. 12. 10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專 門 委 員 朴 鍾 成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
전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67호로 2012년 11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「서울특별시
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가 제정되고 이에 따른 자치구에 옥외
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
표준안에 의거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업무추진에 만전을
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에 따라 현행 옥외광고물의
표시방법 등 관련조문 삭제(제5조 ~ 제18조, 제21조 ~ 제22조,
제29조, 제33조)
- 나.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(안 제6조), 자율관리 협정(안 제7조),
주민협의회 운영(안 제8조),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(안 제11조) 신설

다. 수수료 (별표 3, 4, 5) 및 과태료 조정(별표 6),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조정(별표 7), 별지서식 정비(별지 1~17호)

4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서울시 조례의 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
 -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시·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현행 조례에서 삭제함. (제5조 ~ 제18조, 제21조 ~ 제22조, 제29조, 제33조)
 -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용도(안 제6조), 자율관리 협정(안 제7조), 주민협의회 운영(안 제8조),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(안 제11조) 조문 신설
 -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(안 제20조 별표 1)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(안 제25조 별표 6)을 상향 조정함.
 - 수수료 조정(안 제24조 별표 3, 4, 5) 및 별지 서식 정비(별표 1~15)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개정과 이에 따른 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가 제정 2012년 9월 28일 공포 시행되고, 자치구에 '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표준안'이 2012년 10월에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토록 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,
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,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관 련 법 령

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

제3조(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·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(이하 "광고물등"이라 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"시장등"이라 한다)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.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
2.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
3.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보전산지
4.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자연공원
5. 도로·철도·공항·항만·궤도(軌道)·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
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
7.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·장소 및 물건

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·시·군·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.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·모양·크기·색깔,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. 이 항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)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·관광지·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.

- ⑤ 시장등(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은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·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대한 간판 표시계획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3.29]

제4조(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)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·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·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)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시·도지사(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)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.

③ 시장등(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·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시·도지사(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)는 공중보건,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1.3.29]

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

제20조(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)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10.10] [제30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20조는 제16조로 이동]